

# 안산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607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07. 9. 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## 제안이유

- 2007년 7월 16일자로 안산시 도시브랜드가 ‘브라보안산’ 으로 결정됨에 따라 시정소식지의 명칭을 ‘굿모닝안산’ 에서 ‘브라보안산’ 으로 개정하여 시 이미지의 통일성을 기하고 대내·외적으로 널리 홍보하고자 함.

## 주요내용

- 가. 안산시시정소식지 명칭을 ‘브라보안산’ 으로 변경하여 규정함(안 제2조 부터 제6조까지, 제9조제5호, 제10조제1항).
- 나.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“월2회” 에서 “월1회” 개최토록 변경하여 규정함(안 제8조).

개정조례안 : 별첨

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관계법령발췌서 : 해당없음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사전예고 결과 : 의견 없음

- 입법예고 : 2007. 8. 24. ~ 2007. 9. 13.(20일)

기타 참고사항 : 해당없음

# 안산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부터 제6조까지와 제9조제5호, 제10조제1항 중 “굿모닝안산” 을 각각 “브라보 안산” 으로 한다.

제6조 중 “굿모닝안산편집위원회” 를 “브라보안산편집위원회 “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월 2회” 를 “월 1회” 로 한다.

제11조 중 “안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” 를 “「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 ” 로 한다.

제12조제1항과 같은조제2항 중 “다음 각호의 1” 을 각각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” 로 한다.

## 부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편집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 조치) 이 조례 시행 전 종전 조례에 따라 위촉된 굿모닝 안산편집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브라보안산편집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.

소관 실·과		기획예산과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공보담당관 윤 동 재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홍보기획담당 조 두 행
	담 당 자 성명·전화	이 세 영 (행정 2045)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2조(명칭 및 발행인) 안산시시정소식지의 명칭은 “ <u>굿모닝안산</u> ” 이라 하고, 발행인은 시장이 된다.		제2조(명칭 및 발행인)	-----	----- ----- “ <u>브라보안산</u> ” ----- -----
제3조(규격 및 발행) “ <u>굿모닝안산</u> ” 의 규격은 타블로이드(36센치미터×24센치미터)로 하고, 매월 2회 발행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집을 발행할 수 있다.		제3조(규격 및 발행)	“ <u>브라보안산</u> ”	----- ----- -----
제4조(배부대상) “ <u>굿모닝안산</u> ” 의 배부대상은 안산시 주민 전체로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에는 경기도내 시·군 및 유관기관과 기타 필요로 하는 기관(단체)에 배부할 수 있다.		제4조(배부대상)	“ <u>브라보안산</u> ”	----- ----- -----
제5조(게재내용) “ <u>굿모닝안산</u> ” 에는 다음 사항을 게재한다. 1. ~ 5. (생략)		제5조(게재내용)	“ <u>브라보안산</u> ”	----- ----- 1. ~ 5. (현행과 같음)
제6조(편집위원회) “ <u>굿모닝안산</u> ” 에 대한 주민 참여를 높이고 양질의 소식을 제작·발행하기 위하여 <u>굿모닝안산편집위원회</u> (이하 “편집위원회” 라 한다)를 둔다.		제6조(편집위원회)	“ <u>브라보안산</u> ”	----- ----- ----- <u>브라보안산편집위원회</u> ----- -----
제8조(회의) ①편집위원회 회의는 월 2회 위원장이 소집·개최한다. 다만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·개최할 수 있다. ②(생략)		제8조(회의) ①	-----	----- 월 1회----- ----- ----- ②(현행과 같음)
제9조(기능)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갖는다. 1. ~ 4. (생략) 5. 기타 “ <u>굿모닝안산</u> ” 의 제작 및 발행에 관한 사항		제9조(기능)	-----	----- -----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-- “ <u>브라보안산</u> ” ----- -----

현행	개정안
<p>제10조(명예기자) ①시장은 “<u>굿모닝안산</u>”의 발행에 필요한 기사의 취재 및 자료수집등을 위하여 10명이내의 일반명예기자를 둔다.</p> <p>② ~ ⑤(생략)</p>	<p>제10조(명예기자) ①----- “<u>브라보안산</u>” ----- ----- -----</p> <p>② ~ ⑤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1조(수당 및 원고료 등) ①편집위원회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<u>안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</u>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② ~ ③(생략)</p>	<p>제11조(수당 및 원고료 등) ①----- ----- 「<u>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</u>」 ----- -----</p> <p>② ~ ③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2조(해촉 등) ①시장은 편집위원이 <u>다음</u>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②시장은 명예기자가 <u>다음</u>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	<p>제12조(해촉 등) ①-----<u>다음</u>----- -----<u>각 호의 어느 하나</u>----- -----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-----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</u>----- -----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